

# 통영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입주자 모집공고

-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9.01입니다 (청약자격조건서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서 판단기준일임)
- \* 당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일부 개정 조항(시행일 2017.07.26)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청약 기일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 KB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KB국민은 제외)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f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 채권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내'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2순위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입주신청 및 통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민주체가 담당하며, 통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 해당 주택건설지역(통영시)은 '주택법' 제 63조 규정의 의거 비유기과열지구입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항에 의거 통영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도 신청가능하나, 동일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영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통영시) 거주 신청자가 기타지역(통영시 외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기타지역(통영시 외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아파트는 2017.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부칙<국도교를부영> 제268호 제1조에 따라 민영주택 청약가점제가 조정됩니다.
  - \* 2017년 1월 1일부터 경상남도 통영시 민영주택의 85㎡이하 주택은 20%만 가점제가 적용되며,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09. 01) 현재 공급신청자나 공급신청자의 세대내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우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격자에 1년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본 아파트는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 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대금지 및 채담철 제한기간
  - 당 주택건설지역(통영시)은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법」 제57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원납 후 전매가 가능함)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예정된 초등학교 부지는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따라 해당관청의 학교이전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신설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 원문 유적(제한면적 : 약 1,600.00㎡ -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이 있으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성되며, 해당부지는 수분양자의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음.
-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전력공급은 모두 지중화시설로 계획되어있어, 추후 아파트 단지로 별도의 인입시설 필요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아파트단지 전면 해안에 계획중인 오토계류장은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외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므로 인허가관청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조정 변경 될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대지면적은 61,526㎡이나, 아파트 전면도로와 후면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대지면적 중 약 2,400㎡를 공동주택 사용시에 통영시에 도로로 기부채납 할 예정이고 입주민의 분양대지면적은 59,126㎡이며, 이 면적은 이후 확정측량 결과 및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으로 다를 수 있음.(세대별 대지면적은 입주민 분양대지면적인 59,126㎡에서 배분하였으며, 면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금융결제원 시스템상 사업승인 받은 주택청이 등록되지 않음으로 사업승인상의 59.9362A1은 모집공고상 59.6362로 변경 표기됨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텔하우스(<http://greencorebest-ty.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텔하우스만을 관광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통영시 건축디자인과 - 0000호(2017.09.0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 공급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59-1 외 280필지
- ☐ 대지 면적 : 61,526.00㎡ 중 59,126㎡
- ☐ 공급 규모 : 지하3층, 지상25층, 15개동 공동주택(아파트 1,257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일반주택공급(국가유공자 등) 11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85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1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5세대 포함]

☐ 공급 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는 (㎡)	합계	공급세대수					일반 공급	최저총수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			특별공급			노부모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일반 (기관추진)	다자녀		신혼부부		
민영주택	2017001084-01	59.9362A	59.9362	16.7987	78.7329	36.7624	115.4953	38	57	38	11	236	16		
	2017001084-02	59.9362	59.9362	18.7967	78.7329	36.7624	115.4953	9	14	9	2	60	4		
	2017001084-03	59.9568B	59.9568	19.9938	79.9504	38.7749	116.7253	11	17	11	3	77	5		
	2017001084-04	84.9764A	84.9764	25.8677	110.8441	52.1210	162.9651	26	40	26	8	168	12		
	2017001084-05	84.9522B	84.9522	25.9416	110.8938	52.1082	163.0000	26	40	26	8	168	12		
	2017001084-06	84.9610T	84.9610	24.7286	108.6876	52.1115	161.7991	4	6	4	1	27	-		
	2017001084-07	110.9402A	110.9402	82.7673	143.7075	68.0461	211.7536	-	5	-	1	31	2		
	2017001084-08	110.9113B	110.9113	82.6095	143.5208	68.0284	211.5492	-	5	-	1	31	2		
	2017001084-09	141.9449P	141.9449	43.9752	185.9201	87.0632	272.9833	-	1	-	-	-	11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됨

※ 당첨 및 등호수 배정은 신청 주택형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배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X 0.3025 또는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안락치수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은 계단, 복도, 통출입구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등의 면적입니다.

※ 각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주거 부분의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하였습니다.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일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정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할산 시 상이할 수 있음.

□ 공공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금액 : 천원, 부가가치세포함)

행별	세대 합계	동별	층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중도금 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59A	380	101동 102동 105동	1층	10	72,528	146,472	-	219,0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65,700	
			2-3층	20	72,528	151,472	-	224,0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67,200
			4-5층	20	72,528	156,472	-	229,000	22,900	22,900	22,900	22,900	22,900	22,900	22,900	22,900	22,900	22,900	22,900	22,900	68,700
		6-10층	50	72,528	161,472	-	234,0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23,400	70,200	
		기타층	145	72,528	165,472	-	239,000	23,900	23,900	23,900	23,900	23,900	23,900	23,900	23,900	23,900	23,900	23,900	23,900	71,400	
		1층	3	72,528	137,472	-	210,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63,000	
		2-3층	6	72,528	142,472	-	215,0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64,500	
		4-5층	6	72,528	146,472	-	219,0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65,700	
		6-10층	15	72,528	151,472	-	224,0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67,200	
		22층 이상	33	72,528	155,472	-	228,0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68,400	
59	94	101동 102동	1층	3	72,528	137,472	-	210,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63,000	
			2-3층	6	72,528	142,472	-	215,0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21,500	64,500	
			4-5층	6	72,528	146,472	-	219,0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65,700	
		6-10층	15	72,528	151,472	-	224,0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22,400	67,200		
		11-21층	33	72,528	155,472	-	228,0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68,400	
		22층 이상	9	72,528	165,472	-	238,000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23,800	71,400	
		1층	2	72,528	148,472	-	221,0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66,300	
		2-3층	4	72,528	153,472	-	226,0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67,800	
		4-5층	4	72,528	158,472	-	231,000	23,100	23,100	23,100	23,100	23,100	23,100	23,100	23,100	23,100	23,100	23,100	23,100	69,300	
		6-10층	10	72,528	163,472	-	236,000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70,800	
기타층	27	72,528	167,472	-	240,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72,000			
59B	119	103동	1층	1	72,528	139,472	-	212,0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63,600	
			2-3층	2	72,528	144,472	-	217,0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65,100	
			4-5층	2	72,528	148,472	-	221,0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66,300	
		6-10층	5	72,528	153,472	-	226,0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67,800		
		기타층	13	72,528	157,472	-	230,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69,000	
		1층	1	72,528	139,472	-	212,0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21,200	63,600	
		2-3층	2	72,528	144,472	-	217,0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65,100	
		4-5층	2	72,528	148,472	-	221,0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22,100	66,300	
		6-10층	5	72,528	153,472	-	226,0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22,600	67,800	
		22층 이상	3	72,528	167,472	-	240,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72,000	
59B	119	104동	1층	1	73,301	140,699	-	214,0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64,200	
			2-3층	2	73,301	145,699	-	219,0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65,700	
			4-5층	2	73,301	149,699	-	223,0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66,900		
		6-10층	5	73,301	154,699	-	228,0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68,400		
		11-17층	7	73,301	158,699	-	232,0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69,600		
		18층 이상	8	73,301	168,699	-	242,0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72,600	

102동	1층	1	73,301	140,699	-	214,0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64,200
	2-3층	2	73,301	145,699	-	219,0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65,700
	4-5층	2	73,301	149,699	-	223,0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66,900
	6-10층	5	73,301	154,699	-	228,0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68,400
	11-21층	11	73,301	158,699	-	232,0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69,600
	22층 이상	4	73,301	168,699	-	242,0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72,600
	1층	1	73,301	140,699	-	214,0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64,200
	2-3층	2	73,301	145,699	-	219,0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65,700
	4-5층	2	73,301	149,699	-	223,0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66,900
	6-10층	5	73,301	154,699	-	228,0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68,400
103동	11-17층	7	73,301	158,699	-	232,0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69,600
	18층 이상	3	73,301	168,699	-	242,0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72,600
	1층	1	73,301	140,699	-	214,0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64,200
	2-3층	2	73,301	145,699	-	219,0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65,700
	4-5층	2	73,301	149,699	-	223,0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66,900
	6-10층	5	73,301	154,699	-	228,0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68,400
	11-21층	11	73,301	158,699	-	232,0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69,600
	22층 이상	3	73,301	168,699	-	242,0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72,600
	1층	1	73,301	140,699	-	214,0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64,200
	2-3층	2	73,301	145,699	-	219,0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65,700
104동	4-5층	2	73,301	149,699	-	223,0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66,900
	6-10층	5	73,301	154,699	-	228,0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68,400
	11-21층	11	73,301	158,699	-	232,0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69,600
	22층 이상	3	73,301	168,699	-	242,0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72,600
	1층	1	73,301	140,699	-	214,0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64,200
	2-3층	2	73,301	145,699	-	219,0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21,900	65,700
	4-5층	2	73,301	149,699	-	223,0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66,900
	6-10층	5	73,301	154,699	-	228,0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22,800	68,400
	11-23층	13	73,301	158,699	-	232,0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23,200	69,600
	24층 이상	2	73,301	168,699	-	242,0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24,200	72,600
105동	1층	12	102,368	191,962	-	294,300	29,430	29,430	29,430	29,430	29,430	29,430	29,430	88,290
	2-3층	24	102,368	197,962	-	300,300	30,030	30,030	30,030	30,030	30,030	30,030	30,030	90,090
	4-5층	24	102,368	204,962	-	307,300	30,730	30,730	30,730	30,730	30,730	30,730	30,730	92,190
	6-10층	60	102,368	210,962	-	315,300	31,330	31,330	31,330	31,330	31,330	31,330	31,330	93,990
	기타층	148	102,368	216,962	-	319,300	31,930	31,930	31,930	31,930	31,930	31,930	31,930	95,790
	1층	12	102,360	195,940	-	298,300	29,830	29,830	29,830	29,830	29,830	29,830	29,830	89,490
	2-3층	24	102,360	201,940	-	304,300	30,430	30,430	30,430	30,430	30,430	30,430	30,430	91,290
	4-5층	24	102,360	208,940	-	311,300	31,130	31,130	31,130	31,130	31,130	31,130	31,130	93,390
	6-10층	60	102,360	214,940	-	317,300	31,730	31,730	31,730	31,730	31,730	31,730	31,730	95,190
	기타층	148	102,360	220,940	-	323,300	32,330	32,330	32,330	32,330	32,330	32,330	32,330	96,990
107동	1-2층	31	101,606	330,394	-	432,000	43,200	43,200	43,200	43,200	43,200	43,200	43,200	129,600
	3층	10	101,606	216,394	-	318,000	31,800	31,800	31,800	31,800	31,800	31,800	31,800	95,400
	201호	1	101,606	363,394	-	465,000	46,500	46,500	46,500	46,500	46,500	46,500	46,500	139,500
	1층	1	132,976	236,385	23,639	393,000	39,300	39,300	39,300	39,300	39,300	39,300	39,300	117,900
	2-3층	2	132,976	244,567	24,457	402,000	40,200	40,200	40,200	40,200	40,200	40,200	40,200	120,600
	4-5층	2	132,976	251,840	25,184	410,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123,000
	6-10층	5	132,976	260,022	26,022	419,000	41,900	41,900	41,900	41,900	41,900	41,900	41,900	125,700
	기타층	10	132,976	267,294	26,729	427,000	42,700	42,700	42,700	42,700	42,700	42,700	42,700	128,100
	1층	1	132,976	222,749	22,275	378,000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113,400
	2-3층	2	132,976	230,022	23,022	386,000	38,600	38,600	38,600	38,600	38,600	38,600	38,600	115,800
108동	1층	12	102,368	191,962	-	294,300	29,430	29,430	29,430	29,430	29,430	29,430	29,430	88,290
	2-3층	24	102,368	197,962	-	300,300	30,030	30,030	30,030	30,030	30,030	30,030	30,030	90,090
	4-5층	24	102,368	204,962	-	307,300	30,730	30,730	30,730	30,730	30,730	30,730	30,730	92,190
	6-10층	60	102,368	210,962	-	315,300	31,330	31,330	31,330	31,330	31,330	31,330	31,330	93,990
	기타층	148	102,368	216,962	-	319,300	31,930	31,930	31,930	31,930	31,930	31,930	31,930	95,790
	1층	12	102,360	195,940	-	298,300	29,830	29,830	29,830	29,830	29,830	29,830	29,830	89,490
	2-3층	24	102,360	201,940	-	304,300	30,430	30,430	30,430	30,430	30,430	30,430	30,430	91,290
	4-5층	24	102,360	208,940	-	311,300	31,130	31,130	31,130	31,130	31,130	31,130	31,130	93,390
	6-10층	60	102,360	214,940	-	317,300	31,730	31,730	31,730	31,730	31,730	31,730	31,730	95,190
	기타층	148	102,360	220,940	-	323,300	32,330	32,330	32,330	32,330	32,330	32,330	32,330	96,990
109동	1-2층	31	101,606	330,394	-	432,000	43,200	43,200	43,200	43,200	43,200	43,200	43,200	129,600
	3층	10	101,606	216,394	-	318,000	31,800	31,800	31,800	31,800	31,800	31,800	31,800	95,400
	201호	1	101,606	363,394	-	465,000	46,500	46,500	46,500	46,500	46,500	46,500	46,500	139,500
	1층	1	132,976	236,385	23,639	393,000	39,300	39,300	39,300	39,300	39,300	39,300	39,300	117,900
	2-3층	2	132,976	244,567	24,457	402,000	40,200	40,200	40,200	40,200	40,200	40,200	40,200	120,600
	4-5층	2	132,976	251,840	25,184	410,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123,000
	6-10층	5	132,976	260,022	26,022	419,000	41,900	41,900	41,900	41,900	41,900	41,900	41,900	125,700
	기타층	10	132,976	267,294	26,729	427,000	42,700	42,700	42,700	42,700	42,700	42,700	42,700	128,100
	1층	1	132,976	222,749	22,275	378,000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113,400
	2-3층	2	132,976	230,022	23,022	386,000	38,600	38,600	38,600	38,600	38,600	38,600	38,600	115,800
110A	1층	1	132,976	222,749	22,275	378,000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113,400
	2-3층	2	132,976	230,022	23,022	386,000	38,600	38,600	38,600	38,600	38,600	38,600	38,600	115,800
	1층	1	132,976	222,749	22,275	378,00								

1108	20	106동 2호관인	4-5층	2	132,976	237,234	28,729	384,000	39,400	39,400	39,400	39,400	39,400	39,400	118,200	
			6-10층	5	132,976	244,567	24,457	402,000	40,200	40,200	40,200	40,200	40,200	40,200	40,200	120,600
			기타층	7	132,976	251,840	25,184	410,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123,000
			1층	1	132,848	232,865	23,287	389,000	38,900	38,900	38,900	38,900	38,900	38,900	38,900	116,700
			2-3층	2	132,848	240,138	24,014	397,000	39,700	39,700	39,700	39,700	39,700	39,700	39,700	119,100
			4-5층	2	132,848	248,320	24,832	406,000	40,600	40,600	40,600	40,600	40,600	40,600	40,600	121,800
			6-10층	5	132,848	255,593	25,559	414,000	41,400	41,400	41,400	41,400	41,400	41,400	41,400	124,200
			기타층	10	132,848	262,865	26,287	422,0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126,600
			1층	1	132,848	218,320	21,832	373,000	37,300	37,300	37,300	37,300	37,300	37,300	37,300	111,900
			2-3층	2	132,848	225,593	22,559	381,0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114,300
1108	17	106동 3호관인	4-5층	2	132,848	232,865	23,287	389,000	38,900	38,900	38,900	38,900	38,900	38,900	116,700	
			6-10층	5	132,848	240,138	24,014	397,000	39,700	39,700	39,700	39,700	39,700	39,700	119,100	
			기타층	7	132,848	247,411	24,741	405,0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121,500	
			141P	12	171,427	662,339	66,234	90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270,000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함)

※ 잔금은 사용경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임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임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 경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별도계약품목(발코니확장, 추가선택 옵션금액)이 미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상기 중도금대출 일정은 당 사업지의 분양율 및 금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임.

□ 공통사항

- 2009. 4. 1. 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8㎡ 초과하는 주택형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었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동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익률 제기할 수 없음 향후 지 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이하 면적 변경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위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각공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임.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원시 불출입)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의 경우 익 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업체로 부과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정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박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일반(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함)으로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저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 9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을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음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주택 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우주택여부 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장소

구분	일시	장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17. 09. 06. (수) [10:00~16:00]	당시 건물주택 (통영 심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당첨자 선정	

※ 단,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인하여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01.)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8호) 및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는 제외함.

- 노후모양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잔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잔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 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효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국토교통부령 제158호, 2014.12.26.)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유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되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접수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주의 형제·자매·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며느리·사위·친척·지인 등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해당구간의 금액이 있으면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관련)

구분	통영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 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 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신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1조에 따라 당첨자 중 최하층 주택을 희망하는 자(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에게 최하층 중 무작위로 등·호수를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 합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59.9362A	59.9362	59.9566B	84.9764A	84.9522B	84.9510T	110.9402A	110.9113B	141.9449P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8	9	11	26	26	4	-	-	-	11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7	14	17	40	40	6	5	5	1	185
신혼부부 특별공급	38	9	11	26	26	4	-	-	-	11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	2	3	8	8	1	1	1	-	35
합 계	144	34	42	100	100	15	6	6	1	448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영시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무안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우주택세대구성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주와 동일인 세대주 및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을 말함]으로서 해당 기관장에 추천을 받은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복무 군인(입주자지속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지역 구분없이 청약이 가능함) 단, 경쟁이 있는 경우 통영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 우선 공급합니다

• 신청대상

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p>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철거민,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유족, 장애인(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p> <p>북한이탈주민/남북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군인, 공무원, 우수기능인/우수선수,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p> <p style="text-align: center;">박사학위 취득 영구 귀국자</p>	<p>청약통장 필요없음</p> <p>입주자 지속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분</p>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이며,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28호) 및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는 제외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호대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장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전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경전에 관한 행정규칙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
  -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전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탈락하여 거주하는 자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인 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 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 2년이내인 자
  - 울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포연맹·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일정한 우수 선수 및 우수 기능인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통영시장이 정하고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나. 외국인투자의 촉진,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인국제체육공자 또는 그 유족
  -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 2년 이내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청약경쟁률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신청(등·호 배정) 및 계약불기]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5% 이내)**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7.09.01)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해당건설지역(통영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자, 단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통영시에 거주한 자에 우선 공급합니다.

②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녀(타이를 포함) 3명 이상을 둔자

③ 입주자자축에 가입하여 해당하는 청약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입신 중에 있는 태아도 포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입신의 경우 입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시 제출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입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나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입주 전 파양 한 경우에는 부작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 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055-268-2531

• 다자녀가구 배정 기준표(신청시 배정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정기준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4)	20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5)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년 미만	5
		10년 이상	5

(1), (2) : 주민등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 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 저축 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점취소 및 계약해제  
 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정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7.09.01.)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

① 해당건설지역(통영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자

②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이내이고 기간에 임신중(임주자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로 확인, 이하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임양의

경우에는 임양신고일 기준, 이하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 및 적용됨) 등으로 확인.
-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 참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③ 입주자자촉에 가입하여 해당하는 청약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④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의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어야 함.

\*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임양의 경우에는 임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인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신청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청약약을 포함한다)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신혼부부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이미지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소득금액 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험모집인, 방한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무직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신청용기내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라서	* 접수장소	

\* 입주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소득인증서류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공급세대수의 3% 이내)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7.09.01)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주
  - ① 해당건설지역(통영시), 경성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②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
  -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청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 ※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기간을 산정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인정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 바람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결정하되, 해당건설지역(통영시)에 계속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후 잔여물량 발생 시 타지역 거주자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 됨.
- 동종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고, 당첨에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 동일 자격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인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 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 토록 함. (건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채형관"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2) 2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임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 APT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전남, 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01) 현재 통영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청약 등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통영시)에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당첨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  
 (2013.0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명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제3항 별표 2관련)

구분	통영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관련 신청자격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이하 : 가점제 적용(가점제20%, 추첨제 80%), 모든 청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li> <li>• 85㎡초과 : 추첨제 적용(100%)</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요건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li> <li>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남은 청약예금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li> <li>3) 청약지속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남은 청약예금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본인으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li> <li>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남은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자.</li> </ol> </li> </ul>
인	
영	1순위
주	
택	2순위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건물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일반공급

- ① 총별·동별·호별·행별 구분없이 주택건설지역(통영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청약순위·청약접수 별도 청약접수 결과 및 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1조에 따라 당첨자 중 최하층 주택을 희망하는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에게 최하층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재선정 합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함)

■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선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지속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85㎡이하 : 가점제 적용(가점제20%, 추첨제 80%), 모든 청약자는 가점제로 청약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 85㎡초과 : 추첨제 적용(100%)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공방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반발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주택소유 및 당점사실 판단대상
  -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1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채형관”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점수 선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우주백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우주백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③ 입주자 지속 가입기간	17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지속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지속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9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지속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지속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지속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 포함)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 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지속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입주자지속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지속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지속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주자지속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부양가족으로 본다.</p> <p>3) 입주자지속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지속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③ 입주자지속 가입기간</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지속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지속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p>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점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등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후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지(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 부적격 당청자에 대한 영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의2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청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시가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청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영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영단 전산관리 지정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

- 칙, 제 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영단을 당첨자 영단에서 식재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칙적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의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신청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예치금액 변경 즉시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①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단, 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정날의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변경전보다 작은 주택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전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지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인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점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참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li> <li>•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1순위자에 한함)</li> <li>•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li> <li>•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li> <li>-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li> <li>-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ul> </li> <li>※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등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본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li> <li>•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li> </ul>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화된 서명으로 공금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li> </ul>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시 : 주택청약 추가은행(기원,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세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입출금 통장 개설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li> <li>- 영업점 방문 청약자 : 청약자 거래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li> </ul>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7.08.15.(금)] 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환 불 장 소	
구 분	환 불 장 소
인터넷 청약자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서와 동일), 신청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경증서], 인감도장(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서와 동일),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3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2017. 09. 06. (수) 10:00~16:00	• 건본주택 방문접수	• 당사 건본주택
		• 2017. 09. 07. (목) 08:00~17:30	• 인터넷 신청	•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홈페이지(www.ap2you.com)
일반공급	1순위	• 2017. 09. 08. (금) 08:00~17:30	• 인터넷 신청	• 2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크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크 이용자(www.ap2you.com)
	2순위	• 2017. 09. 08. (금) 08:00~17:30	• 인터넷 신청	• 2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크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크 이용자(www.ap2you.com)

-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1인 1건에 한해 접수 가능함. (대리인 접수 포함) ※예) 1인 2건 이상 접수 불가
- ※ 주택청약 참가은행(16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 상기 1순위, 2순위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 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장애인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공서류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당시 건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세대주 인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0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0		인감도장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0		주민등록증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청약신청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종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0		정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안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장래의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존청 관리영단으로 접수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재형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다자녀 특별공급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양의 경우
	0		임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임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에 경과된 경우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노부양 피부양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별첨제: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잠공고일 이후 발행본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0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0	소득증빙 서류	본인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0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기본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양의 경우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0	임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임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경증서
0	비사업자 확인각서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0	인감증명서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인감도장	청약자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위임장	대리인	
0	주민등록증	대리인	
0	인장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상기 증명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01) 이후 발행본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  
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회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등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일시 : 2017. 09. 06. (수) 17:00 이후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개재	일시 : 2017. 09. 14. (목)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일시 - 2017.09.19.(화)~2017.09.21.(목) (3일간, 10:00~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일시 : 2017. 09. 14. (목) 장소 : 당사 홈페이지 개재 (http://www.greencorebest-ty.co.kr)		
	2순위			

- ※ 특별공급 등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건보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등·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 청약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등·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상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 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건보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및 당첨자 발표신문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채서비스 → 주택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12you.com)에 접속 → APT
	이용기간	2017.09.14 ~ 2017.09.23. (10일간)	→ 당첨사실조회
전화 /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
	이용기간	2017.09.14 ~ 2017.09.23.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신청시 SMS 당첨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7. 09. 14 (목)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등·호수 결정

선 정 방 법

구 분

- 당사 건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특별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를 가점제(나머지 8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 시 1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 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청약신청자중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통영시 거주자가 우선함.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 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영단은 당첨자 발표 시 공고함.

일반공급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영단은 당첨자 발표시 아파트투유(www.ap12you.com)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 가능함.
- 당첨 취소 및 미계약 물량 등은 마지막 계약 체결일 익일에 사업주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본주택에 아래 예시와 같이 공고 예정임.  
※예시 : 당첨 취소 및 미계약 물량 등 총\*\*호(\*동\*호)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5 계약조건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구 비 서 류	비 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 통	0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0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0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	
	0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0	0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0	0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0	0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압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0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0	0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0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일주자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된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0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0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출거예정증명서	
	0		• 소청/저가주택민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0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자격조건

- ①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②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금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③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④ 신청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⑤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번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⑥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금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⑦ 임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재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임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⑧ 주변단지외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⑨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⑩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⑪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금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주택증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⑫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⑬ 아파트의 대지면적이 차후 지적공부 정리절차에 의해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연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⑭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응량, 속도, 탈승위치 등) 등은 시공시연도서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⑮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에 준함.

▣ 분양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종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대구은행	505-10-191797-8	(주)아시아신탁

▣ 계약자 대출안내

- 종도금 대출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 금융기관 지정 불가함).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필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종도금 대출할 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종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한 임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당사가 대납하며, 임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이자후불제)

- 중도금 등금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도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 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외국인의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대출관련 확인 후 청약,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는 입주자정 개시일 약1~2개월 전에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잔금)예정일 : 2020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까지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개소), 주민운동시설(1개소-체력단련장), 작은도서관(1개소), 경로당(1개소), 어린이집(1개소), 주민회의실(1개소), 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6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일정

		(단위 : m <sup>2</sup> /천,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주거전용면적)	59.9362A	59.9362	84.9764A	84.9522B	84.9610T	110.9402A	110.9113B	141.9449P
금액	4,400,000	6,100,000	7,600,000	7,100,000	3,900,000	8,900,000	9,700,000	11,800,000

구분	납부일정	59.9362A	59.9362	59.9566B	84.9764A	84.9522B	84.9610T	110.9402A	110.9113B	141.9449P
계약금	계약시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잔금	입주시	3,400,000	5,100,000	6,600,000	4,500,000	6,100,000	2,900,000	7,900,000	8,700,000	10,800,000

▣ 납부 계좌

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대우은행 505-10-192929-2	아시아신탁(주)

▣ 발코니 확장 유의 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 총액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공사비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비확장 부위 발코니창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세무사항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 위치 등 세무사항은 상품카드록 또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용(유리, 창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충풍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선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세대는 비확장 발코니에 선충풍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비확장 세대 상·하·좌·우세대)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의 위치, 에어컨 배립배관 위치, 창호 크기, 세대간 마감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틀, 유리 또는 기타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시업주체는 적법한 관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 VAT포함)

주목형	선택안	설치 위치	금액	비고
59A, 59, 59B 84A, 84B	옵션1	2대	3,900,000 5,300,000 7,200,000	택1
	옵션2	3대		
	옵션3	4대		

주목형	선택안	설치 위치	금액	비고
110A, 110B	옵션1	3대	5,800,000 7,300,000 9,000,000	택1
	옵션2	4대		
	옵션3	5대		

주목형	선택안	설치 위치	금액	비고
141P	옵션1	3대	6,100,000 7,400,000 10,800,000	택1
	옵션2	4대		
	옵션3	7대		

※ 상기 시스템 에어컨 브랜드는 LG전자 또는 삼성전자이며 추후 업체 선정 시 통보 예정임.

□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 냉장고

(단위 : 원, VAT포함)

주목형	구분	금액	비고
전 광형	빌트인 냉장고(삼성 RS674CHQFSR)	5,200,000	

주목형	구분	금액	비고
59A, 59, 59B	빌트인 김치냉장고(삼성 RQ22K5L01EC)	1,300,000	

□ 주방 가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선택안	구분	금액	비고
전 평형	옵션1	하이브리드복합(동양 GRA-BH301H)	600,000	택1
	옵션2	광파오븐(삼성 HSB-N361B) + 하루장	600,000	
	옵션3	하이브리드복합(동양 GRA-BH301H) + 광파오븐(삼성 HSB-N361B) + 하루장	1,200,000	

주택형	선택안	구분	금액	비고
141P	옵션1	와인셀러(LG R-WZ46JXX)	1,300,000	택1

□ 가구

- 안방불박이장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옵션금액	비고
59A, 59, 59B	안방 불박이장	3,700,000	
84A, 84B, 110A, 110B, 141P	안방 불박이장	4,500,000	

- 시스템가구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선택안	구분	옵션금액	비고
59, 59B, 84B, 110A, 110B	옵션1	벽체 + 슬라이딩 도어	1,700,000	옵션1 선택 시
	옵션1	시스템 가구	1,200,000	

□ 바닥 타일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옵션금액	비고
141P	거실	9,800,000	
	테라스	9,200,000	

□ 내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옵션금액	대우은행	505-10-192930-3	아시아신탁(주)

※ 플러스옵션(시스템에어컨, 냉장고, 가구, 주방가전 등)의 제품명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플러스옵션(주방가전,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가구)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플러스옵션(주방가전,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가구) 선택사항은 아파트 공금 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플러스옵션(주방가전,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가구)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플러스옵션(주방가전,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가구) 제품이 전시되어 있으므로 설치위치, 수량 등을 참고하시고,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플러스옵션(주방가전,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가구)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등의 단시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빌트인 전면 도어판넬은 계약자 추가 별도 구매사항이며, 김치보관용기는 제품 성능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천정형 냉매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계약자가 별도로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경우, 설치와 관련된 모든 공사는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니다.(냉매 배관 등 추가설치 안됨)
- 플러스옵션(주방가전,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가구)은 상기 제조사 이외에 계약자가 임의로 제조사를 지정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플러스옵션(주방가전,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가구)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음.
- 플러스옵션(주방가전,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가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의 플러스 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함.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안방)은 시공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및 불박이 가전제품의 유형, 가격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① 공통사항

- 주택법 제54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 선택 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②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문	목재문(문틀, 포켓도어 포함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PI창호	목재문 가틀(사중 및 옥실문 하부실 제외), 발코니 내부 PI창호, 세대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	바닥재(마루판, 장판지, 현관바닥강화전연석, 현관다목적수납장 바닥타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데, 에이컨 실외기실 바닥 마감 등	바닥 난방 +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래핑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 도장, 신발장, 현관 다목적 수납장, 침실 불박이장(간 주택형별 1개소), 발코니 선반류	콘크리트 벽체 위 조배지 마감 또는 기타 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도장	천장을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 박스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수전 등), 샤워부스 코너선반, 욕실 약세 처리, 욕실장, 바닥배수구 커버, 욕실환풍기 등	액체방수 및 구제위 방청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약세처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주방액정TV, 가스쿡탑 및 빌트인 가전류 등	소방경사 관련 후드 주방배기 덕트
일반가구	신발장, 각종 가구 및 수납장(발코니 확장에 포함되는 품목 제외), 수납 선반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욕실 및 주방매입등	매입등(욕실매입등 제외),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④ 마이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거용면적)	59.9362A	59.9362	84.9764A	84.9522B	84.9610T	110.9402A	110.9113B	141.9449P
기본옵션(마이니스옵션 금액)	18,281,700	18,281,700	25,704,700	25,716,200	25,436,500	33,994,000	33,949,800	43,226,4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 미포함 가격이며, 마이니스 옵션 선택 계약시 공급금액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니스 옵션 선택 시 회차별 비율에 따라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 단위 조정으로 납부일정별 다소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마이니스 옵션선택 및 유의사항

- 1) 마이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되는 방식임.
- 2) 상기 마이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설치해야함.
- 3) 상기 마이니스옵션 금액은 지체수금 시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시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4)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5) 마이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길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신청지침 제3조 규정 외 거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함.
- 6) 마이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시후관리를 위하여 자금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함.

- 7)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8) 마이너스음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소방시설 및 방수, 단열, 마감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임주자에게 있음.
- 9) 마이너스음션 부분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함
- 10) 마이너스음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임주자에게 있음.
- 11) 마이너스음션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임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선은 적법한 관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임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12)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을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임별 마이너스음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13) 마이너스음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바닥재의 경우 당초 마루판을 기준으로 타자재(대리석)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 마이너스음션 세대의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임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될 수 있음.
- ※ 상기 마이너스음션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 마이너스음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음션) 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함.
- ※ 마이너스음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음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7 기타

###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극에 소지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등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청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정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극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 ③ 기타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임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한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공부상 주택으로 통제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소형, 자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기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자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자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 가점항목을 처음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한 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의2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단,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의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의 청약요건 충족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①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② 청약지속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인 회화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행 방범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함.

####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대구은행으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건설자금을 지원받은 주택으로, 주택형별 대출금액은 59A형(59형포함)은 세대당 ₩11,002,000원, 59B형은 ₩11,002,000원, 84A형은 세대당 ₩15,659,000원, 84B형은 세대당 ₩15,659,000원, 84T형은 세대당 ₩15,659,000원, 110A형은 세대당 ₩20,508,000원, 110B형은 세대당 ₩20,508,000원, 141P형은 세대당 ₩26,289,000원(별도 1세대는 ₩26,289,000원)이 대출되어 준공 후 사업주체가 상환 예정임.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기본주택, 인쇄물, 분양 홈페이지 등에 사용 및 제시된 제품은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수입품인 경우 양질의 대체제품이 있을 경우, 신제품이 개발되었을 경우에 유사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기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기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 주택 및 현장물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담당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외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견본주택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동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권입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석재, 주변환경, 부지 고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차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장소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차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금가적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금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음 및 제3자 제공 등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시 임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투자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인거래발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범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8 단지 여건사항

###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는 남포초등학교 이전 예정으로 해당관청의 학교이전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전계획 및 학생 수 통계확은 향후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본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터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등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임주 시에 최초 공급 당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찰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부리시설은 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의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관조영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은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영,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임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소음, 불빛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임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외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분 및 주차장의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등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상 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시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옥상의 형태는 본 공사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일면 물딩설치에 따른 일면 물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인접 동은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와 인접한 동은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과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별도 분양시설) 과 인접한 일부 동은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 시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동은 옥상에 공동시정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 설치됨.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등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임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등등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이나 표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환경영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도로, 일조, 진압로 등), 주변개발, 조망권,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부대관리시설의 운영방식 결정, 운영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입주 후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에 일임함
- 단지 주·부출입구, 부대관리시설, 주차출입구, 보행로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 조망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저층부 외부마감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 반영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아파트와 분할할 수 없으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장폭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우수수 배수시설, 지수조 등 입주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저층부와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원문 유적이 있으며, 해당 부지는 수분양자의 대지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문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문화재정의 문화재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원문 유적은 본 아파트 입주민이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보존지역의 지상, 지하의 건축 등 제한행위가 제한되어 향후 유적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등 문화재의 정책과 관련하여 입주 후 재산권(소유권 등)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원문유적지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예정된 초등학교는 해당관청의 학교이전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경우, 입주시부터 2년간 배정된 초등학교까지 등하교시 차량을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단지내 상가 옥상에 설치되는 바닥 분수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여야 함.
- 단지내 상가 상부에 계획된 테라스하우스의 테라스는 상가 및 전면 도로의 소음에 노출되며, 이외 대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음.
- 101동과 108동사이의 등의 일부세대에서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용벽으로 후면장에서 시야가 차단될수 있음.
- 아파트 단지 앞 쪽에 요트계류장이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동의 비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환경관리사업소의 유지관리에 의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국도 14호선 및 지방도 1021호에 의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9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흡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피난공간(관련규정에 근거)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옥실장 및 옥실거울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결례받이 미 시공됨.
- 옥실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됨(욕조 및 샤워부스 제외).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등 환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의 경우 나무 식재로 인해 시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전에 분양카달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주/부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상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단위세대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정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신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임주민들에게 있음.
- 공사착수 후 아파트의 현장여건(지질상대, 주변민원등)에 따라 토목공사 및 지정 공법이 사임승인도서와 달리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특화시설 모형도, C.G 및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주민회의시설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함.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세대 발코니에 장식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부의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중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장애자램프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과 기계/전기실은 대관 안-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등선, 인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입주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없음.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내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또는 온천공 등이 발견될 시 지하구조물 및 토목 옹벽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위치 및 통행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배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재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접세대의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위상안테나, 피뢰침 등의 기타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양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태양광 집열판 설치는 승인조건에 따름)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은 실 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변경 허용 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재는 기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기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기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공사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풍용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확장시 선풍용 배수관을 가리기 위해 벽체가 일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외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와 외장재 등은 제조사 및 외부인면 계획 등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 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옥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옥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옥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외부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기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공사시 열체,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 가전류 등 창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임.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등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 확장세대와 비확장 세대가 좌·우·상·하에 연결하는 등에 따라 비확장세대 발코니 측 외부에 단열재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는 별도의 대피공간 계획되어 있음.
- 본 공사 시 부대복리시설의 동선 및 기능개선,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내·외부 디자인과 규모, 구조,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 세대 일부 벽체에는 지역난방 배관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음.

☐ **건본주택 고지사항**

- 건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동종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하지 않음.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음선 품목, 전시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건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위생도기,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재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소파, 커튼, 거실장, 거실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가 시공에서 제외됨.

☐ **친환경주택의 성능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분	적용여부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1~2등급 기밀참호	적용	단위세대 창호일람표에 반영
고효율기자재	적용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콘센트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동스위치	적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공용주차장 조명기구 고효율 기자재 및 동등성능 이상 제품 사용
공용회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대복리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마이크로파 방식)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항목

구분	순번	설치항목	순번	설치항목	비고
항목	1	가스밸브 차단	9	1.2층 및 최상층 동채감지기	
	2	조명 제어기	10	스마트홈시스템	
	3	난방 제어기	11	주방TV	
	4	현관방범 감지기	12	일괄소등제어	
	5	주동현관 통제기	13	디지털도어록	
	6	원격검색시스템	14	웹리베이트 호출 연동	
	7	침입감지기	15	현관도어카메라	
	8	차량통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m<sup>2</sup>/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소방감리	구조감리
회사명	㈜포스코에이엔씨건축사사무소	㈜대화	㈜디에이치기술단	㈜대한구조이엔지
감리금액	2,843,496,700	531,170,000	242,000,000	77,000,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호	₩	임주자모집광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등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임금 등의 남부

□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는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 합니다.

가. 주택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

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정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정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정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각목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남부한 계약금 및 종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택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남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남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남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남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남부종자를 통보한 후에 그 남부종지통보계좌에 남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남부기일 전에 남부한 입주금종 남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택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종도금을 초과하여 남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남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남부 지연으로 남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택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니스 옵션,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정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남부한 입주금
16.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남부한 입주금
17. 주택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어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남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임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임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임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임주금의 90퍼센트 이내의 해당하는 잔금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역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주체	㈜우전도시개발	191211-0027015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97(무전동)
	㈜상정코아건설	180111-0797499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6. 4층(부원동)
	㈜상정	180111-0050095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은천동)
시공사	㈜상정코아건설	180111-0797499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6. 4층(부원동)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greencorebest-ty.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03번지

☐ 분양문의 : 055) 641-9088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관계법령을 우선합니다.)